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가합53760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피고주식회사 A

변론 종결2014. 8. 28.

판결 선고2014. 10. 16.

주 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8,701,956원 및 그 중 1,147,237,746원에 대하여는 2012. 8. 10.부터, 182,630,260원에 대하여는 2012. 9. 21.부터 각 2013. 10. 2.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5. 17.경 신용보증한도 미화 4,000,000달러, 대출취급기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수입자 UNITED NATIONS, 보증기간 2011. 5. 18.부터 2012. 5. 17.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2011. 12. 30.경 신용보증한도 180,000,000원, 대출취급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보증기간 2011. 12. 30.부터 2012. 6. 29.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대출취급기관인 우리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상환하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나. 피고의 대출

피고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행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에게 수출환어음의 매입신청을 하였고, 우리은행은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액면금 미화 1,013,197.09달러인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행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포괄수출금융대출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피고는 2012. 7. 10.경 회생절차의 개시로 위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2. 8. 9.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수출환어음 매입 잔액인 미화 1,017,054.74달러(= 미화 1,013,197.09달러 + 이자 미화 3,857.65달러)의 원화 환산액인 1,147,237,746원(= 미화 1,017,054.74달러 × 보증채무이행 당일 최초로 고시되는

매매기준율 1,128원/달러, 원 미만 버림)을, 2012. 9. 20. 한국수출입은행에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그 당시까지의 대출원리금 182,630,260원(= 원금 180,000,000원 + 이자 2,630,268원, 원 이하 버림)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합계 8,833,95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연대보증인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한 대위변제금 등의 합계 1,338,701,956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147,237,746 +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82,630,260원 + 채권보전비용 8,833,950원) 및 그 중 우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147,237,746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8. 10.부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82,630,26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2. 9.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3. 10. 2.까지는 약정 이율 상당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규현

판사배지호

판사조유진